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과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2 월 27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번호 : 723-5052 (휴대전화:010-9395-0958 이지은 간사)

소 개 의 원 : 정동영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건명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년월일	2012년 2월 27일
<p>소개의견</p> <p>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한해 일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양도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세수증가를 가져와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에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현행 주식거래 시와 같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p>	

소 개 의 원

정 동 영 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 .

발 의 자 : . . 의원
(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주식과 파생상품등 자본양도소득이라 할 것임.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주식의 경우도 대주주의 경우이기는 하나 일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게다가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시 거래세도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유독 파생상품만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는 신흥시장인 우리 나라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기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주가지수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었음. 거래 규모도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게다가 파생상품에 대한 현행과 같은 전면적인 비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장차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이 법에서는 파생상품중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수 있고 둘째, 세수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시장의 혼란과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거래세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영의 세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이 거래세 부과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음.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존 증권과 주권에 대한 거래세가 1000분의 5이므로 동일하게 하고,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 함(안 제1조).
- 나.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 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행 주식거래시와 같이 1000분의 5로 함(안 제8조제1항).
- 라.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부칙).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 또는 지분”을 “주권·지분 또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를 “코스닥시장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증권등시장”이라 한다)과”로, “외국증권시장”을 “외국증권등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증권시장”을 “외국증권등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등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증권시장”을 각각 “증권등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第1號 및 第2號외의”를 “제1호·제2호 및 제3호 외의”로 한다.

2.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외의”를 “제1호 및 제2호 외의”로 한다.

2. 파생상품 중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

제8조제1항 중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를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第3條第1號·第2號 및 第3號 但書”를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등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과세대상) <u>주권 또는 지분</u> (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u>코스닥 시장</u>(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u>외국증권시장</u>”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p> <p>2. <u>외국증권시장</u>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p>	<p>제1조(과세대상) <u>주권·지분 또는 파생상품</u>----- ----- ----- ----- ----- ----- ----- ----- -----</p> <p>1. ----- ----- ----- ----- -----<u>코스닥</u> -----<u>시장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u> (이하 “<u>증권등시장</u>”이라 한다)과----- ----- “<u>외국증권등시</u> <u>장</u>”----- -----</p> <p>2. <u>외국증권등시장</u>----- ----- ----- ----- -----</p>

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생략)

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株券”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券 또는 株式預託證書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第3條(納稅義務者)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3. (현행과 같음)

第2條(定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증권시장-----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第3條(納稅義務者) -----

-----.

1. -----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讓渡되는 株券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讓渡되는 株券

<신 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第1號 및 第2號외의 株券등의 讓渡의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渡者. 다만,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非居住者 또는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外國法人이 株券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경

가. 증권등시장-----

나. 증권등시장-----

2.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3. 제1호 및 제2호-----

4. 제1호·제2호 및 제3호 외의

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受人
으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다.

1. (생략)

<신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
분에 의한 가액

가.나. (생략)

② (생략)

第8條(稅率) ① 증권거래세의 세
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第1項의 稅率은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緊急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
장에서 去來되는 株券에 限하
여 種目別로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稅率을 引
下하거나 零의 稅率로 할 수
있다.

第9條(去來徵收) ① 第3條第1號·
第2號 및 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株券 등을

-----.

제7조(과세표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파생상품 중 선물은 약정금
액, 옵션은 거래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條(稅率) ① 주식등과 파생상
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
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

-----증권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
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第9條(去來徵收) ① 제3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4호 단서---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정동영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